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17371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173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나2468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AA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A 담당변호사 송BA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진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BB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1. 선고 2001나24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주채무자인 진C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진C쿠어스맥주'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잔존원금 9,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비용의 합계 금 11,237,282,39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인정받고는 진C쿠어스맥주의 정리계획에 따라 2009. 12. 31. 위 원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1999. 12. 8. 위 원금의 현가액 상당액인 금 3,669,247,45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 회사가 인가받은 화의조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성질을 변경하여 보충성을 인정함으로써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채무자의 정리계획 등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때에야 비로소 피고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그 원리금은 분할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2) 주채무자인 진C쿠어스맥주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정해진 정리계획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원금의 변제기일을 2009. 12. 31.까지로 연기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되, 신주발행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제기일의 연기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연기된 변제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연 10.15%의 비율에 의하여 공제한 원금 및 이자의 현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즉시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진C쿠어스맥주가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 2009. 12. 31. 그 원금의 전액을 변제하는 것과 신주발행 및 주금납입에 따라 즉시 그 원금액의 40.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파악하여 동일한 변제의 효과를 부여하려는 데에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3)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2009. 12. 31.로 변제기일이 연기된 원금을 1999. 12. 8.자 현가액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 회사로서는 위 원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주채무자인 진C쿠어스맥주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채권의 원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원래의 원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위 현가액 사이의 차액인 금 5,330,752,541원(= 9,000,000,000 - 3,669,247,459)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주채무자인 진C쿠어스맥주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 진C쿠어스맥주의 정리계획의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변제받지 못한 잔존원금을 화의조건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나 화의조건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